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운영 관련 사항 규정〉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97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안의 필요성	4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13
2. 조문별 검토	15
가. 목적, 설치 및 운영의 원칙(안 제1조 ~ 제3조)	15
나. 총장 등 학교의 조직 관련(안 제4조~제8조)	21
다. 학생의 정원, 입학자격, 선발 등 학교 운영 관련(안 제10조~제15조) ...	28
라. 시설 및 재정지원 등(안 제16조~제19조)	36
마.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안 제20조 및 제22조)	39
바. 부칙	4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4. 22.
3. 회 부 일 : 2026.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음악·연극·영상·무용·미술·전통예술 등 6개 원 체제를 통해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창의적 예술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한편, 현재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국립 예술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기반을 구축하며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두고 그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둠(안 제2조).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마)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장애인 중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10조).

바)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13조).

사)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 함(안 제15조).

아)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III.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제정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1)에 따른 대학으로 하고,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예술학교의 조직, 학생의 선발 등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술학교는 1991년 12월 30일 제정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3528호, 시행 1993. 1. 1.)에 근거하여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설립되어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악·연극·영상·무용·미술·전통예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예술 인재 양성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해왔음.

예술학교는 세계적 대회에서 음악, 무용, 영상, 미술 분야별 입상성과²⁾를 통하여 대한민국 예술역량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대학 평가 순위 기관이 발표한 ‘QS 세계대학
랭킹 2025’에서 세계 공연예술부문 대학 중 19위(아시아 전체 중 1위)
를 달성³⁾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라 실질적인
대학원 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여건과 교육체계를 갖추고 ‘예술전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
사·박사 학위 과정을 수여할 수 없는 교육 과정상의 한계가 있음.

이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취득한 사람의 학업과 취업 기회의 불리함,
해외 유학생 유치의 장애, 국내 및 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 운영
불가, 일부 학생들의 상위 학위과정 취득을 위한 해외유학 등 인재의
해외 유출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 제15대·제17대·제21대 국회에서도 유
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공청회 개최 및 소위원회 심사가

2) 2024년 주요국제대회 수상 실적 : 지나 바카우어 국제피아노 콩쿠르 1위, 베를린 국제무용콩쿠르
탄츠올림프(현대무용 시니어 솔로부문) 1위, 칸 국제영화제 라 시네프 공식초청, 독일 Red Dot
Design Award Best of Best 수상

출처 :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3) QS 세계대학 랭킹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고등교육 평가 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QS)에 의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수준, 국제화, 졸업생 평판 등을 평가하여 매년 발
표하는 전 세계 대학 순위임.

출처 : 한국예술종합학교 보도자료, “한예종! 공연예술부문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선정”, 2025. 3.
13.

이루어졌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한국예술종합학교 관련 법률안 국회 논의 현황 >

국회	법률안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안일	학교 위치	법안소위 논의 (공청회 개최)
제15대	국립예술대학교설치법안	임채정의원 (152217)	1999.11. 2.	서울	소위 심사(5회) 공청회 미 실시
제17대	한국예술학교설치법안	우상호의원 (171343)	2005. 2. 3.	서울	소위 심사 (4회) 및 의결 ⁴⁾ , 공청회 실시
제21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이채익의원 (2113330)	2021.11.16.	규정 없음	소위 심사(1회 ⁵⁾), 공청회 실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박 정의원 (2114682)	2022. 2. 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윤덕의원 (2117794)	2022.10.13.	문체부 장관이 정함	

제21대 국회의 공청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측은 미국의 줄리어드 스쿨 등 해외 유명 예술학교와 국내 예술대학 및 전통문화대학교에서도 실기 석사·박

4) 법안심사소위원회(제252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이후 전체회의(제252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공청회 개최 이후로 전체회의 의결이 보류되었고, 전체회의(제252회(임시회) 제6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 후 전체회의(제253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은 3회 되었으나, 실제 논의는 1회만 이루어짐

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기목적의 학교와 석사·박사학위과정 수여는 양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장함.

또한, 예술학교 석사·박사 과정 지원에 반대하는 일반 예술대학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예술학교는 박사과정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전문예술사과정에 해당하는 석사과정 정원이 감소되므로, 추가적인 정원 확대나 예산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음.

반면, 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측은 예술학교는 실기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로, 이론 중심의 석사·박사학위 과정을 설립하는 것은 예술학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실기 중심의 운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장함.

또한, 예술학교 석사·박사 학위 과정 신설이 지방을 포함한 다른 대학의 예술 분야 학생 수요 감소를 야기함으로 인하여 다른 예술대학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아울러, 예술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상의 특혜를 받고 있는데, 석사·박사과정까지 추가하게 될 경우 과도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주장함.⁶⁾

이러한 예술학교를 ‘대학’으로 변경하는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학원의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업 및 해외 유학과 관련한 학생의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문화예술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반면, 교육부는 예술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 ‘대학’에 비해 현행과 같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각종학교’를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각종학교를 대학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 취지와 성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타 예술대학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정책적 판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2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06회 국회(임시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한편, 예술학교는 현재 세 개의 캠퍼스에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는데, 본관 및 별관교사가 위치한 서울 석관동 캠퍼스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의릉’의 일부로 해당 부지는 국가유산청의 소유이며 예술 학교는 국가유산청의 관리위임을 받아 부지를 사용하고 있음.

<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현황 >

구분		위치	면적 (㎡)		용도
			부지	건물	
석관동 캠퍼스	본관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83,211	67,179	본부동(학교본부, 예술정보관), 강의동, 극장동, 연희실습장, 학생회관, 무대제작실습장, 천장관, 창조관 등
	별관		44,638	28,811	미술원, 전통예술원, 전통음악실습장, 전통문화연수동, 무용·연희실습장, 송추공방동, 철공·목공실, 미술원전문사동, 정문초소 등
서초동 캠퍼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19	19,001	음악원, 무용원
대학로 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4,072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연구원 등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은 의릉의 복원을 위하여 1998년부터 예술학교에 청사확 보 등 이전대책 수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고, 의릉의 완전한 복원 을 위하여는 예술학교의 건물 철거 후 학교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지형복원이 필요한 상황임.⁷⁾

이에 국가유산청은 매년 예술학교 석관동 캠퍼스에 대한 관리위임을 연장하면서도 의릉의 복원을 위한 적극 협조 및 캠퍼스 이전을 위한 추진현황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바, 예술학교 석관동 캠퍼스의 이전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예술학교 위치 이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학교 통합캠퍼스 유치를 희망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전부지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예술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인 데 비하여, 2024년 기준 공연티켓 판매액의 79.1%가 수도권에 집중⁹⁾되는 등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 간 문화격차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공연예술학과 대학 및 대학원의 62.4%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

7)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보존·관리·활용 중장기 계획 연구」, 2021, p.238.

8) “문체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한예중 통합이전’ 유치전 격화 - 고양·송파 경쟁 과열에 결정 중단, 최근 과천까지 추진단 꾸려 가세, 성북은 ‘석관동 캠퍼스’ 존치 주장”, 서울신문, 2023. 8. 4.

9) 2024년 공연 티켓판매액 1조 4,588억원 중 서울, 경기, 인천의 티켓 판매액은 1조 1,543억원임.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지표(<https://data.kcti.re.kr/compare>)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하여 지역 문화 예술 분야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전국 시도별 공연예술학과 수(2024년 기준) >

지역	무용	뮤지컬	방송연예	연극영화	영화	합계
서울	34	6	6	36	12	94
경기	15	5	13	43	9	85
인천	0	0	0	3	0	3
부산	7	2	2	6	5	22
충남	2	3	3	11	3	22
충북	2	0	1	9	1	13
전북	3	1	1	4	1	10
경북	4	0	1	3	0	8
대전	2	0	0	3	2	7
경남	4	0	1	0	0	5
광주	4	0	0	1	0	5
대구	2	1	0	2	0	5
전남	1	0	0	3	0	4
인천	0	0	0	3	0	3
강원	2	0	1	0	0	3
제주	0	0	0	1	0	1
소계	82	18	29	125	33	287

※ 자료 :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이에 개정안은 예술학교의 소재지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 미술관 등의 문화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1995년부터 광주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문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문화예술 확산을 통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

법으로 이해됨.

하지만, 예술학교 측에서 제정안에 대하여 예술 교육의 핵심인 현장성과 네트워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후술하게 될 예술학교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와 같이 제정안의 주요 쟁점인 예술학교의 석사·박사학위 과정 설치, 예술학교 소재지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예술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친 후 제정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본칙 22개 조문과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설치 등, 운영의 원칙,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 학생의 정원, 입학자격, 선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다른 특수목적 대학 설치 개별법률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조문번호	조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등
제3조	운영의 원칙
제4조	총장
제5조	교직원 등
제6조	학교규칙
제7조	각 원
제8조	대학원
제9조	기획위원회
제10조	학생의 정원
제11조	입학자격
제12조	학생의 선발방법
제13조	수업연한 등
제14조	학위의 수여
제15조	예술영재교육
제16조	부속시설 등
제17조	교육시설의 지원

조문번호	조제목
제18조	교육재정 지원 등
제19조	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	교육관계법률의 적용
제22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부칙 제2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5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력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참고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소재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하며,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31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설치 및 운영의 원칙(안 제1조~제3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사과정”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란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2조(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예술학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	제3조(운영의 원칙) ① 예술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 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 정 안
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 예술학교에 전문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며, 전문과정은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으로 한다.	② 예술학교는 다른 예술 대학 또는 학과와 협력·교류하여 예술 관련 학술·학문·교육 연구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예술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3조¹⁰⁾는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예술학교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예술학교의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예술학교를 대학으로 간주함으로써, 예술대학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들과 같이 예술분야의 특수성을 효과적

1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3조(설치 등) ①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 예술학교에 전문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며, 전문과정은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으로 한다.

으로 반영한 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은 예술학교의 소재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예술학교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시하고 있음.

예술학교의 위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데 찬성하는 측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지역확산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광주·전남 지역의 2025년 기준 공연 점유율이 전체의 2.37%¹¹⁾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어 문화예술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한국의 대표적 국립 예술 교육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호남권의 문화·역사적 자원과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문화산업 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정안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므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하여 예술학교 측은 예술교육의 경쟁력은 풍부한 예술 인프

11)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지표(<https://data.kcti.re.kr/compare>)

라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며, 예술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없이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성장한 예술학교 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저하시키고 미래 예술인재 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예술학교의 특수성, 교육여건,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학교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소재지를 정할 수 있도록 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서울특별시는 특정 지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소재지를 고정하는 방식은 향후 교육 환경 변화,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행정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요소만 고려해 기존 예술생태계를 도외시키고 현 예술학교 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특정지역 이전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예술학교가 장기간 축적해 온 교육 경쟁력을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예술 역량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 소재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정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정안 제2조의 소재지 규정은 법률의 일반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예술학교 교육 특성상 학생들은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국립현대미술관, 방송사, 영화사, 주요 오케스트라 등 서울에 집중된 예술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수업, 실습, 인턴십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현장 연계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져 교육의 질 자체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 목적은 분원 설치, 지역 예술대학 지원 등 대안적 수단으로도 가능하며, 이전 결정은 이해관계자(교원·재학생·예술계) 숙의를 거친 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특수목적 대학들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만 소재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시행령에서 소재지를 충청남도로 명시¹²⁾하고 있고, 다른 법률들은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법인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설치)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설립한다는 규정¹³⁾만 존재하고 있음.

< 특수목적 대학의 종류 및 소재지 관련 조항 >

명 칭	소관부처	근거법령	형태	소재지 조항
경찰대학	경찰청	경찰대학 설치법	소속기관	없음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소속기관	없음
국방대학교	국방부	국방대학교 설치법	소속기관	없음
사관학교	국방부	사관학교 설치법	소속기관	없음
육군3사관학교	국방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소속기관	없음
합동군사대학교	국방부	합동군사대학교령	소속기관	없음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국방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 학교 설치법	소속기관	없음
한국농수산대학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소속기관	없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소속기관	대통령령 위임 (충청남도)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법인	없음
울산과학기술원 (UNIST)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법	법인	없음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법	법인	없음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인	없음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설 연구기관	없음
한국에너지공과 대학교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에너지공과 대학교법	법인	없음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설립)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총장 등 학교의 조직 관련(안 제4조~제9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 정 안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교직원 등) ① 예술학교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③ 예술학교 각 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과 조교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예술실기 업적 및 관련 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학칙) 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	제4조(총장) 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교직원 등) ① 예술학교에 총장 외에 교직원을 둔다. ②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 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른다. ⑤ 교직원 및 겸임교원 등의 임명과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 정 안
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술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각 과정) ①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연극원·영상원·무용원·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원(이하 “각원”이라 한다)의 교과는 예술실기 전공과목 위주로 하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③ 국내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각원의 학과 및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예술실기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각 원) ① 예술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이하 “각 원”이라 한다)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원은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으로 한다. ③ 각 원 및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각 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정하고,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정한다. ④ 원장은 총장의 명을, 학과의 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각 원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조(대학원) ① 예술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창조적 전문예술인을 양성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 정 안
제9조(기획위원회) ① 예술학교의 중·장기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획위원회) ① 예술학교의 중·장기 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총장, 교직원 등, 학교규칙, 각 원, 대학원, 기획위원회 등 대학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도 총장, 교직원, 학칙, 각 원에 해당하는 각 과정, 기획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제정안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은 예술학교가 대학이 됨에 따라 규정해야 할 대학원에 관한 내용임.

예술학교는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의 지위에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르면 ‘각종학교’는 학사학위는 부여할 수 있으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어¹⁴⁾,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예술전문사과정¹⁵⁾’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고등교육법」 제29조¹⁶⁾에 따라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

14)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6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15)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12조(학력인정) 예술학교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총장이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16)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

고,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운영 중인 ‘예술전문사과정’은 실질적으로 석사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석사학위로 인정되지 않아, 졸업생은 박사과정 진학 제한, 공공기관 및 기업 취업 시 자격요건 미충족, 호봉 산정 불이익, 병역특례 제외, 해외 유학 시 정규학위로 인정되지 않아 입학 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라 예술학교가 대학이 되어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따라 대학원을 설치하게 될 경우, 대학원 과정의 운영을 통한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예술가 육성, 국내 및 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 취득,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안 제6조제1항은 학칙을 총장이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총장의 재량으로 맡기고 있는 반면, 제2항은 학칙의 제정과 변경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법해석상의 혼란이 발

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학위의 수여)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에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과거 「고등교육법」은 총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중요사항을 개정
한 경우 학교의 장이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
록 되어있었다가¹⁷⁾, 해당 제도가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을 통해서 폐지된 바 있음.

이는 학교의 장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제·개정하도록 하여 학칙보고
로 인한 학교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음.¹⁸⁾

이러한 입법 연혁을 감안할 때 학칙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는 총장
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안 제6조
제2항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 제7조제2항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9
조에서는 학교의 조직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 및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각 원의 명칭은 시대적 변화와 교육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

17) 「고등교육법」(법률 제9936호, 2010. 1. 22., 일부개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
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
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14일 이
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1802332호) 검토보
고”, 2009.

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원의 명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교육부는 제정안 제8조제1항에 대하여 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인 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법」 제29조¹⁹⁾에 따른 대학원이라는 점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8조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고등교육의 통용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 등은 「고등교육법」 체계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제정안 제21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9)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학생의 정원, 입학자격, 선발 등 학교 운영 관련(안 제10조~제15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 정 안
제5조(각 과정) ④ 각원의 학과 및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① 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예술학교의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 학력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학생의 정원) ①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장애인 중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각 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입학자격) ① 예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예술학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술학교의 각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예술학교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각 원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 정 안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제13조(학생 선발 방법) ① 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1. 일반전형: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출신학교의 성적, 실기시험성적 및 총장이 전공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구술·필기·면접 시험 등의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2. 특별전형: 예술분야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전국 단위의 예술대회 입상실적 등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연한) ① 예술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1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술영재 및 외국인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입학방법을 정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업연한 등) ①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 정 안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뛰어나 해당 수업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학력인정) 예술학교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총장이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다. ② 예술학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각 원과 대학원의 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5조(예술영재교육) ①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학생의 정원, 입학자격, 학생선발 방법, 학위의 수여, 예술영재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우수한 예술 인재를 확보하여 예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 이해됨.

안 제10조제2항은 장애인 중 예술 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각 원에 입학하는 경우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예술영재에 대한 실질적 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현행 「고등교육법령」 20)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될 수 있어, 제정안 제10조제2항은 해당 법령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동 조항의 입법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 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29조(입학·편입학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안 제11조제2항은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술학교의 각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예술인재를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현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0조제1항제2호는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예술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 규정은 예술영재의 예술사 과정 입학에 대하여 ‘예술영재선발위원회’라는 구체적 선발 주체와 선정 방식이 명시된 반면, 제정안은 공정한 선발을 위한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법률에 ‘예술영재선발위원회’와 같은 예술영재 선발 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그 구성 및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학칙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0조제3항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각 원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예술 인재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현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0조제1항과 제2항은

예술사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예술전문사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학사학위 학력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및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예술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예술계 인력 양성 사업²¹⁾의 입시요강을 살펴보면 지원자의 학력조건은 예술사과정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소지하여야 하고,²²⁾ 예술전문사과정 지원자는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과정 수료증을 소지하여야 함.

따라서, 제정안에서도 현재 예술학교의 해외 예술장학생들의 학력요건을 감안하여, 학력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현 설치령과 동일하게 ‘예술영재’에 대한 입학자격 부여 조항 유지가 필요하고, 예

21) AMA+ (Art Major Asian plus Scholarship) 장학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전액 국비 장학제도로 개발도상국 각 국의 예술 엘리트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생으로 배출하는 사업임. 이들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학비 전액과 한국어 연수비용, 체재비, 항공료 등을 지급함.

22)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 학생들 중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등학력으로 인정함

술적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에 대한 입학자격 부여는 선발방법에 대한 논란 우려가 있으며, 특혜 시비 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12조제4항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34조의5²³⁾는 교육부장관이 입학년도 4년 전에 시험의 기본방향, 과목, 평가방식 등을 미리 공표하는 내용으로 예술분야의 입시 특수성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 타 입법례²⁴⁾를 참고하여 해당

23)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회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회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회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교육부는 안 제14조에 대하여 고등교육의 통용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과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자구를 「고등교육법」 제35조²⁵⁾와 일치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제10조(입학전형)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보유자·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②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 인성·소질·적성·능력·발전가능성·경험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5)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라. 시설 및 재정지원 등(안 제16조~제19조, 제21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 정 안
제15조(교육지원시설) ① 총장은 예술 실기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예술 관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술 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학비 보조 등) 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여 주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대상과 학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비부담)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제16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예술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육시설의 지원) 총장은 예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예술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재정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학교 학생에게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 정 안
에서 부담한다. 제16조(설치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교육 관계 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관계법률의 적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의 규정은 예술학교의 시설, 재정, 교원의 배치 및 교육관계법률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학교가 교육관계법률에 따른 시설 및 교원 등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창의적 재능을 가진 인재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안 제17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등 기술과 예술 융합 등 새로운 예술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체부 소속기관 외에 관계기관까지 시설 지원의무 확대하여 예술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18조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가 예술학교에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국립대학(예술 분야 학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국가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안 제20조 및 제22조)

제 정 안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20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 제21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의 권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임.²⁶⁾

따라서, 예술학교와 유사한 단체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도 동일한 조항²⁷⁾을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26)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p.742.

2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마. 부 칙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로 본다.
제3조(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의 학생으로 본다.
제4조(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의 교직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력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받은 자는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가 승계한다.

제정안은 시행일 이외에도 부칙에 예술학교, 재학생, 교직원, 예술전문사 학력인정에 대한 경과조치와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의 승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예술학교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 전반에 대하여 형성된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특히, 안 부칙 제5조에 따라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예술전문사의 석사학위 학력이 인정되어 예술전문사 취득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3조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을 적용받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 및 졸업생까지 포함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안 제4조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²⁸⁾에 따라 ‘교직원’에는 총장·교원·직원·조교가 포함되며 제정안 제5조에 따라 ‘교직원 등’에는 교원·겸임교원·명예교수·직원·조교 등이 포함되므로, 경과조치를 본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조문 제목과 내용을 ‘교직원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제정안 제4조제2항²⁹⁾은 교직원을 총장, 소속 교원, 직원 및 조교로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5조제3항은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

28)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29)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4조(총장)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수 등을 겸임교원 등으로 규정³⁰⁾하고 있는바, 제4조의 ‘교직원’을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3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5조(교직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 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참고1

해외 예술학교 석박사 과정 사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분야	대학 별 (미국)	과정	대학 별 (유럽 및 아시아)	과정
음악원	줄리어드음대	○BM(4년), MM(2년), DMA(4년)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콘서트바토리)	○실기, 이론전공 : Bachelor+Master(4-5년) Doctor(3년)
	맨해튼음대	○BM(4년), MM(2년), DMA(4년)	베를린예술대학교	○실기전공 : Master(2년) Konzertexamen(2년) ○이론전공 : Master(2년) Doctor(3년)
	뉴 잉글랜드음악원 (콘서트바토리)	○BM(4년), MM(2년), DMA(4년)	뮌헨음악대학	○실기, 이론전공 : Master(2년) Meisterklasse(2년)
	이스트만 음대	○BM(4년), MM(2년), DMA(4년)	빈 국립음대	○실기, 이론전공 : Master(2년) Postgraduate(1년)
연극원	Yale 연극학교	○MA(2년), MFA(3년), DFA(5년)	호주 빅토리아 예술대학교(VCA)	○MDA(3년), Ph.D(4년)
	캘리포니아예술학교 (CalArts)	○MFA(3년)	네덜란드 우트레흐트예술학교	○MA
	줄리아드예술학교 (Julliard School)	○MFA(4년/연기)	영국 왕립화술과연극학교(CSSD)	○MA(1년), MFA(2년)
	위스콘신대학교	○MA(2년), MFA(3년), Ph.D	영국 왕립연극예술아카데미(RADA)	○MA(1년)
	컬럼비아대학교	○MFA(3년) ○Ph.D(6년)	영국 런던음악연극예술아카데미 (LAMDA)	○MA(1년), MFA(2년)
영상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16개월)/MFA(3년) /PhD(5-6년)	싱가포르 라살 예술대	○MA(2년)
	American Film Institute(Los Angeles, CA)	○M.F.A(2년)	러시아 VGJK (러시아 국립영화대학)	○석사과정학부부터 5년과정 ○박사과정
	NYU(Tisch School of New York University)	○M.A.(2년) ○M.F.A.(3년)	체코 FAMU	○MA(2년)
	Chapman University(CA, USA)	○M.F.A.(2년)	Beijing Film Academy	○M.A. / M.F.A. / PhD (4년 이상)
	Cal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M.A.(2년)	Sydney Film School (Waterloo, Australia)	○M.M.I(1-1.5년)
	Columbia University	○M.F.A (3년)	La Fémis (Paris, France)	○M.F.A(4년) / PhD(3년)
	UCLA	○MA(1-3년)/MFA(2년 /3년)/PhD(5년)	Australian Film, Television and Radio School	○M.A.S(2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the Arts	○M.A(2년)	Concordia University (캐나다 몬트리올)	○M.F.A(3년)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F.A(2년)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 (NFTS), London	○M.A(2년)
	Stanford University	○M.F.A(2년)	City University of Hong Kong's School of Creative Media	○M.A.(Full Time: 1년; Part-time: 2년) / MFA (2년) / PhD(4년)

분야	대 학 별 (미국)	과 정	대 학 별 (유럽 및 아시아)	과정
			Lodz Film School (폴란드 우즈대학교)	○ B.A(3년) Post-graduate (1-2년) MA(2년) PhD(4년)
무용원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미국)	○ MFA과정(2년)	Trinity Laban Conservatoire of Music and Dance (영국)	○ MPhil/PhD (2년)
	New York University (미국)	○ MFA (1년)	University of Roehampton (영국)	○ MA/PGDip/PGCert (2년)
			University of Surrey (영국)	○ PhD (2년)
			De Montfort University (영국)	○ MFA (1년)
			Amsterdam Art University (네덜란드)	○ MA (2년)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독일)	○ MA (2년)
			Zurich University of the Arts (스위스)	○ PhD (4년)
			Uniarts Helsinki (핀란드)	○ MA (2년)
			Stockholm University of Arts (스웨덴)	○ PhD (4년)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 (프랑스)	○ MA (2년)
			Victoria University (호주)	○ MA(1년)
미술원	Crambrook Academy of Arts (미국)	○ MFA (2년)	Royal Academy of Art (영국)	○ Graduate Diploma(1년), MA, MRes(2년), MPhil, PhD(4년)
	Chicago Arts Institute (미국)	○ MFA (2년)	Chelsea College of Art (영국)	○ Graduate Diploma(1년), MA(2년), MPhil, PhD(4년)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	○ 전문화과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정현원 현황

① 교육공무원 현황

2026. 3.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직 급 별 내 역			비고 (행정 조교)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총 계	157	127	74	33	20	16/16
총 장	1	1	1	-	-	
원 장	6	6	6	-	-	
전임교원	150	120	67	33	20	
음 악 원(원장포함)	-	24	12	7	5	
연 극 원(원장포함)	-	29	20	6	3	
영 상 원(원장포함)	-	22	14	4	4	
무 용 원(원장포함)	-	14	6	6	2	
미 술 원(원장포함)	-	23	12	6	5	
전통예술원(원장포함)	-	14	9	4	1	

학생 정원 현황

2026. 3.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협동과정	합계
예술사	532	340	420	240	380	340	0	2,252
전문사	252	121	147	100	140	76	24	860
합 계	784	461	567	340	520	416	24	3,112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정현원 및 재학생 현황

2026. 3. 31. 기준(단위 : 명)

예술사

원 별	정원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음악원	532	540	117	657
연극원	340	430	97	527
영상원	420	608	146	754
무용원	240	315	55	370
미술원	380	500	96	596
전통예술원	340	366	70	436
협동과정	0	0	0	0
합 계	2,252	2,759	581	3,340

□ 전문사

원 별	정원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음악원	252	225	39	264
연극원	121	208	49	257
영상원	147	245	43	288
무용원	100	171	39	210
미술원	140	195	35	230
전통예술원	76	154	30	184
협동과정	24	24	7	31
합 계	860	1,222	242	1,464

□ 학생 정·현원 및 재학생 현황

구 분	정 원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예술사	2,252	2,759	581	3,340
전문사	860	1,222	242	1,464
합 계	3,112	3,981	823	4,804

□ 원별 학생 정·현원 및 재학생 현황

구 분	정 원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음악원	784	765	156	921
연극원	461	638	146	784
영상원	567	853	189	1,042
무용원	340	486	94	580
미술원	520	695	131	826
전통예술원	416	520	100	620
협동과정	24	24	7	31
합 계	3,112	3,981	823	4,804

□ 원별 학생 정·현원 및 재학생 현황

구 분	정 원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음악원	784	765	156	921
연극원	461	638	146	784
영상원	567	853	189	1,042
무용원	340	486	94	580
미술원	520	695	131	826
전통예술원	416	520	100	620
협동과정	24	24	7	31
합 계	3,112	3,981	823	4,804